

—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3월 22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3월 29일

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,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은 삭제함.

■ 재산세 납기

- 주 택 :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
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
- 건축물 :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
- 토 지 :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

-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함.
-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매년 9.16 ~ 9.30로 변경하고,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현행 1,000분의 2에서 1,000분의 1.5로 인하함.
-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함.
-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함.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5조·제111조, 동법 제2절 재산세(제180조·제181조·제183조, 제187조 내지 제191조)·제196조의 5·제196조의 17·제237조, 동법시행령 제173조의 2
-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·제5조
- 경상북도 재정과-897(2005. 1.27) 시세조례 정비안(행정자치부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택환

-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, 재산세 납기, 자동차세중 시시당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조정,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 및 세율 인하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임.
- 따라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변동사항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